임 대 차 계 약 서

교육 영상 시연용 가상 자료 · 실제 계약서가 아닙니다

임대인	성명 김도윤
임차인	늘봄의원 (원장 한서진, 가명)
임대 목적물	가온빌딩 2층 201호 전체
임대면적	214.5㎡
보증금	금 2억원 (200,000,000)
차임	월 6,000,000원
관리비	월 1,100,000원 (전기료 별도)
임대 기간	2021년 8월 17일 ~ 2024년 8월 16일
용도	의원(진료)

제1조 (목적)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하여 위 용도로 사용한다.

제2조 (보증금과 차임)
임차인은 위 보증금과 월 차임을 약정한 날에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월 차임은 매월 5일까지 선불로 낸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위와 같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별도 합의로 갱신한다.

제4조 (용도 변경 금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용도를 바꾸거나 임차권을 양도·전대할 수 없다.

제5조 (계약 해지)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준다.

제6조 (시설)
임차인은 진료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7조 (보험)
임차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증권 사본을 임대인에게 낸다.

특약사항
1. 임차인이 설치한 의료기기·칸막이 등 시설은 계약이 끝날 때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한다.
2. 임차인이 기간 중 해지하려면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월 차임 2개월분을 위약금으로 낸다.

2021년 8월 10일 임대인 김도윤 (인) / 임차인 한서진 (인)